



# 시보

시보는 공무원로서의 역량을 갖는다

선	기관의 장
람	

제22호 2023. 5. 31.(수)

### 고시

- 광양시 고시 제2023-172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해제고시 ..... 1
- 광양시 고시 제2023-174호 도로명주소(건물번호) 개별 고시 ..... 2

### 공고

- 광양시 공고 제2023-1210호 「매천황헌생가 버스주차장 조성사업」 보상계획(열람) 공고 4
- 광양시 공고 제2023-1218호 공시송달공고 ..... 6

회										
람										

▶ 발행 : 광양시    ▶ 편집 : 홍보소통실 (☎797-2323, 행정2713)



##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해제고시

「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 해제합니다.

2023년 5월 31일

광 양 시



### 1.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해제 대상

지구	위 치	지 정 내 용			지정·해제사유	비고
		유형	등급	면적 (㎡)		
다압 하천	다압면 하천리 산17번지 일원	붕괴 위험	D	14,250	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재해위험요소 해소	해제
다압 금천	다압면 금천리 산4번지 일원	〃	D	9,780	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재해위험요소 해소	해제
옥룡 용소	옥룡면 동곡리 산105-6번지 일원	〃	D	16,315	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재해위험요소 해소	해제
광양 신촌	광양읍 세풍리 산21-5번지 일원	〃	D	12,280	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재해위험요소 해소	해제

2.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일 : 2023. 05. 31.

3. 문 의 처 : 광양시청 안전총괄과(☎ 061-797-3266)

붙임 지구지정 해제 도면 각 1부. 끝.

광양시 고시 제 2023 - 174 호

## 도로명주소(건물번호) 개별 고시

「도로명주소법」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. 5. 31.

### 광 양 시 장

#### ○ 도로명주소

구 분	고 시 대 상	고시조서	비 고
도로명주소 (건물번호) 부여	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서평7길 37-10 외 3건	별지참조	
	아 래 빈 칸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민원지적과(☎797-3388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[www.juso.go.kr](http://www.juso.go.kr)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#### 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23. 5. 31. 고시 후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9조에 의거 공법 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앞으로 공공기관에 민원신청 및 서류제출 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#### 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「도로명주소법 시행령」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「도로명주소법」 제8조제2항에 의거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## 도로명주소(건물번호) 고시 대상

연번	업무구분	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고시일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 부여 사유
계	건물번호 부여 4건					
1	건물번호부여	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992-12	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서평7길 37-10	20230531	20081001	옛 관아 서쪽 들에서 인용, 일련번호식 부여
2	건물번호부여	전라남도 광양시 마동 1018-78	전라남도 광양시 느지매기길 15-19 (마동)	20230531	20130415	옛지명에서 인용
3	건물번호부여	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 1587-5	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신금산단5길 83-9	20230531	20120502	신금일반산업단지에서 인용, 일련번호식 부여
4	건물번호부여	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 도사리 275	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 목길 11-59	20230531	20081001	옛 지명에서 인용

광양시 공고 제2023 - 1210 호

# 「매천황현생가 버스주차장 조성사업」 보상계획(열람) 공고

「매천황현생가 버스주차장 조성사업」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(이하 “토지보상법”이라 함)」 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 등을 열람하시고,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5월 일

광 양 시 장

## 1. 사업개요

- 사업명 : 매천황현생가 버스주차장 조성사업
- 위치 : 전라남도 광양시 봉강면 석사리 794-1
- 사업시행자 : 광양시장

## 2.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

- 광양시 봉강면 석사리 794-1

## 3. 토지·물건조서 열람 및 이의신청

- 기간 : 2023. 5. 31. ~ 2023. 6. 14.
- 열람장소 : 광양시 문화예술과 문화재팀(☎061-797-2419)  
※ 토지·물건 조서 : 별첨
- 이의신청장소 : 광양시 문화예술과 문화재팀
- 이의신청방법 :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토지·물건조서의 내용에 누락 등 이의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음.
- 이의조치 : 이의신청 내용에 대하여 현장 확인 후 시정조치 하며, 이의 신청자에게 결과 통보
- 토지·물건조서 확정 :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토지·물건조서의 내용대로 확정되며, 누락 등의 물건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는 책임지지 않음.

#### 4. 보상시기

- 2023. 6월 중(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후 개별통지)
  - ※ 정확한 일정은 추후 개별 통지 할 예정이며,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#### 5. 보상방법 및 절차

- 보상방법
  -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3인 (도지사나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)의 감정평가업자가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 평균치를 보상가격으로 결정하고 협의요청
  -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나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를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으며,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1/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함.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를 2회 이상 할 수 없음.
- 보상절차 : 보상계획(열람) 공고→토지 등의 감정평가→손실보상 협의→보상
- 협의조건 : 토지 및 물건 등에 압류 및 근저당 등이 설정되어 있는 소유권이외의 모든 권리는 소유자가 권리를 해지한 후 협의에 응하여야 함.
-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(1인) 추천
  - 1) 요건 :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/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
  - 2) 기한 :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
  - 3) 제한 :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를 2회 이상 할 수 없음.

#### 6. 기타사항

-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을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개별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대신합니다.
- 보상액,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정평가가 완료된 후 보상시기에 맞추어 상세 안내문을 별도 통지할 예정입니다.
- 기타 상세한 사항은 광양시 문화예술과 문화재팀(061-797-2419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 공 시 송 달 공 고

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50조의3제4항 규정에 의거, 임대사업자에게 『공공건설임대주택 덕진광양의봄아파트 매각에 따른 시정 조치 요청』 공문을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우편물이 반송되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23년 5월 31일

## 광 양 시 장

1. 공고내용 : 공공건설임대주택 덕진광양의봄아파트 매각에 따른 시정 조치 요청
2. 법적근거 :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50조의3제4항 위반
3. 공고기간 : 2023. 5. 31. ~ 2023. 6. 20.(20일간)
4. 공고장소 : 광양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
5. 공고대상자(송달내용)

공공건설임대주택 소재지	임대사업자	송달내용	반송주소	반송사유
광양시 광양읍 서평1길 9, 덕진광양의봄아파트	정*은	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50조의3 규정에 의거 공공건설임대주택 덕진광양의봄아파트 매각에 따른 시정 조치 요청	대전광역시 유성구 송림로 13, 107동 1602호(하기동, 송림마을아파트1단지)	폐문

6. 유의사항
  - 위 내용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50조의3 규정에 의거 공공건설 임대주택 덕진광양의봄아파트 매각에 따른 시정 조치 요청합니다.
  - 통보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광양시 건축과(☎061-797-2872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